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계약 진행 시 필히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계약불가)

■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일부개정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계약금 납부
부동산 분양계약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분양대금(총 공급대금)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분양권 전매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실제 거래가격 (분양대금+프리미엄)	

※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체결일 납부에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로 변경되었지만,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해 **계약체결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세액

구분	기재금액	세액	본인 부담금(50%)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등)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1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2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3만5천원
	1억원~10억원 이하	15만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5천원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간 연대하여 균등 납부(각 50%)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구입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홈페이지 접속 :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서비스 클릭 후 구매 선택 납부정보 입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등 소유권이전 금액 : 해당금액 입력 건수 : 1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후 출력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계약 전 복사본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인지세 납부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매수 : 1매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재 결제 (현금납부만 가능) 전자수입인지 발급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계약 전 복사본 제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셔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할 경우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시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세 납부 안내 (온라인 발급 방법)

■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

- 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네이버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③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④ 구매 - 납부정보 입력



⑤ 출력



- ① 용도 : 인지세납부
- ② 과세문서 종류 :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③ 금액 : 해당금액
- ④ 건수 : 1건
- ⑤ 확인 및 결제
- ⑥ 전자수입인지 사본 당사 제출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테스트 출력'으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정당계약시 반드시 제출